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936
------	------

2017. 8. 30.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8월 14일, 김용석의원외 9명

나. 회부일자 : 2017년 8월 16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276회 임시회】

-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2017. 8. 30)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토론, 의결(수정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기획조정실장 장혁재)

- 서울연구원의 설립, 이사회 구성 및 운영, 주요사업 등에 대한 자치법적 근거를 명확히 정해 시정 관련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위해 설립된 서울연구원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효과적인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윤병국)

가. 개정안의 개요

- 본 개정안은 서울시정과 관련한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위해 설립된 서울연구원의 운영과 지원 사항을 정하는 조례를 각종 법령과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맞도록 전면적으로 정비해 서울연구원의 정체성 확보와 효과적인 운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나. 서울연구원 운영 현황

- 서울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복잡하고 다양한 도시문제의 효과적인 해결을 위한 주요 시책과제를 체계적·전문적으로 조사·분석하고 각종 정책을 개발해 서울시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2년 설립되었음.
- 당초 ‘서울특별시시정개발연구원’으로 출발해 2012년 ‘서울연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현재 1본부 6실 3센터에 모두 292명(정규직 128명, 연구참여 164명)의 인력을 갖추어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 가운데 최대 규모로 성장하였음.
- 현재 매년 서울시의 출연금과 수탁사업비를 합해 300억원 규모의 예산을 바탕으로 250건 이상의 각종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음.

〈서울연구원 인력현황〉

○ 인 력 : 총 292명 (2017년 8월 현재)

- 정규직원 : 128명

계	임 원	연구직	일반직 · 전문직	공무직
128	1	75	46	6

※ 60세 이상 축탁직 : 10명

- 연구과제 참여 직원 : 164명

계	박사급 연구원	석사급 연구원	
		기간제 연구원	프로젝트 연구원
164	18	46	100

〈서울연구원 연도별 연구 수행 현황〉

(2017. 8. 10. 기준, 단위 : 건수)

구분	계	자체연구					협력연구	수탁연구
		소계	정 책	기 초	현 안	수시		
총계	1,235	770	319	137	170	144	67	398
‘17년	163	119	43	22	18	36	9	35
‘16년	263	170	57	31	24	58	34	59
‘15년	248	147	46	28	23	50	24	77
‘14년	198	120	48	21	51	-	-	78
‘13년	187	117	59	15	43	-	-	70
‘12년	176	97	66	20	11	-	-	79

다. 주요 개정사항 검토

- 1992년 서울연구원 설립과 동시에 제정된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는 이후 기관명칭 변경 등에 따라 모두 3회의 개정이 있었지만 제정당시의 틀을 20년 이상 유지해 오면서 일부 관련 법령의 변경 사항과 일치하지 않거나 변화된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음.
- 특히, 서울연구원의 설립근거나 사업영역, 원장과 감사의 임명, 경영평가 등 서울시의 출연 연구기관으로서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일부 사항들도 포함하지 못하였음.
- 개정안은 이에 따라 기존 9개 조항의 조례를 정비해 모두 12개 조항으로 전면적으로 개정하고자 하였으며, 여기에는 기존에 포함하지 못했던 서울연구원의 설립근거와 사업영역, 원장의 임명, 경영평가 관련 사항을 새롭게 정하였음.
- 이 밖에 이사회 구성과 운영, 사업계획서와 결산서 제출의무 등을 개정된 법령이나 변화된 자치법규 환경에 맞도록 정비하였음.
- 우선, 안 제2조와 제3조를 신설해 서울연구원의 설립 근거를 명확히 하고, 연구원의 사업범위를 정하였음.
- 현행 조례가 서울연구원의 운영과 지원에 대한 사항을 위주로 규

정하면서 서울연구원의 설립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안 제2조가 서울연구원의 설치와 법인격을 명확히 정한 것은 필요한 조치라고 평가됨.

- 아울러, 안 제3조에서 서울연구원이 수행하는 각종 연구의 종류와 성격을 정확하게 열거한 것은 서울연구원의 연구범위를 명확히 정해 서울시가 추진하는 각종 주요 정책에 대한 전담 연구기관으로서 기관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한편, 정해진 한계를 넘어서는 불필요한 업역의 확대를 막는데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안 제5조는 서울연구원의 정관변경, 임원선임, 사업계획 및 예산, 경영평가를 포함한 각종 주요 사항을 의결하는 최고 의결기구인 이사회와 이사의 자격을 보다 명확히 하였음.
- 현재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은 서울연구원 임원의 선임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이사의 추천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음.
- 현행 조례는 원장에게 이사를 추천하는 기관과 단체를 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구체적인 경력이나 범위의 제한없이 단순히 학계와 산업계 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자칫 이사회 구성의 공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 안 제5조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원장이 이사로 추천받을 수 있는 이사의 범위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10년 이상 종사했거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회사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임·직원, 법조계와 언론계·시민단체·지방연구원에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 분명히 정하였음(참고자료 1).
- 서울연구원의 최고의결기구인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의 추천 자격을 일정한 자격 기준에 따라 조례로 엄격히 정한 것은 이사회 의 위상과 역할에 비추어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이와 함께 이사회 운영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과 이사장 직무대행 순서를 조례에서 정한 조치도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이사회가 별다른 혼란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조치임.
- 다만,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하거나 재직한 사람으로 이사의 경력을 강화하면서 실제 이사 추천의 범위가 지나치게 축소되는 역기능이 발생할 우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함.
- 안 제8조는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에 대한 시장의 사전 승인과 함께 관계 법령이 정한 바와 같이 결산서 제출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였음.
- 이는 현행 법과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서울연구원이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이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해 승인을 받도록 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부속서류를 포함한 결산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을 반영한 조치로 판단됨.

- 이 밖에도 개정안은 제10조의 경영평가 관련 조항을 신설해 서울연구원에 대한 경영평가 실시근거와 결과에 대한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조치 등에 대한 사항을 법령과 일치하도록 정비하였음.

라. 종합의견

- 개정안은 1992년 서울연구원의 설립과 함께 제정된 조례가 25년 이상 시간이 경과하는 과정에서 법령 개정사항과 변화된 행정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적인 시각에서 조례 전체를 최근의 자치법규 정비 상황에 적합하도록 개정한 것임.
- 특히, 서울연구원 설치와 운영의 가장 기본적인 자치법규 임에도 연구원 설립근거와 사업영역은 물론이고, 이사회 구성과 운영 등 가장 기본적인 사항도 규정하지 못한 기존 조례의 공백을 메우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통해 서울연구원의 정체성 강화는 물론이고 자치법규 체계 정비를 통해 이를 접하는 시민의 편익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수정안가결

(재적위원 11명, 참석위원 6명,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936
----------	---------

제안년월일 : 2017년 8월 30일
제안자 : 기획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이사의 추천 자격이 지나치게 강화되어 이사회 구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일부 완화하고,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2. 수정의 주요 내용

- 가. 이사 추천자격을 각계에서 5년 이상 경험이 있는 경우로 완화함 (안 제5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해당 없음.
-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다. 기 타 :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 중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를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안 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연구원의 정관에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정관변경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 제3조 중 “중·장기계획”을 “중·장기계획”으로, “국·내외”를 “국·내외”로, “공동연구·학술대회”를 “공동연구, 학술대회”로 한다.

안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연구원에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원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이사회와 2명의 감사를 둔다. 이사회는 이사장 및 서울연구원장(이

하 “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이사회 구성 중 어느 한쪽의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안 제5조제4항 중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원장은”을 “원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의 “10년이상”을 각각 “5년 이상”으로 한다.

안 제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호의 예산·결산보고에 대하여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검토의견 및 결산 감사보고서

안 제10조의 제목 “제10조(경영평가 등):”을 “제10조(경영평가 등)”으로 한다.

안 제12조를 삭제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되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시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서울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u>」에 따라 설립되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시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서울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설립) ①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서울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연구원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③ 연구원의 정관에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정관변경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제2조(설립) ①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서울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연구원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③ 연구원의 정관에는 「<u>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u>」(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정관변경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서울특별시(이하 “시장”<u>이라</u>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제3조(사업)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 행정에 관한 <u>중·장기계획</u> 및 자료의 조사연구 2. 시 행정의 주요 당면과제에 대한 조사연구 3.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u>국내·외</u>의 연구기관과 민간단체로부터의 연구용역, 원가계산 등의 수탁 4. 시 행정에 관한 연구관련 도서 및 간행물 발간 5. 연구기관과의 <u>공동연구·학술대회</u> 및 정보 교류 협력 6. 기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p>제3조(사업)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 행정에 관한 <u>중·장기계획</u> 및 자료의 조사연구 2. 시 행정의 주요 당면과제에 대한 조사연구 3.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u>국내·외</u>의 연구기관과 민간단체로부터의 연구용역, 원가계산 등의 수탁 4. 시 행정에 관한 연구관련 도서 및 간행물 발간 5. 연구기관과의 <u>공동연구</u>, <u>학술대회</u> 및 정보 교류 협력 6. 기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이사회 등) ① 연구원에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원의 중요사항을 심의·결하는 이사회와 2명의 감사를 둔다. 이사회는 이사장 및 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

<단서신설>

② ~ ③ (생략)

④ 법 제8조4항에 따른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을 이사로 추천한다.

1. 학계: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학교에서 10년이상 교육관련 업무에 종사했던 사람
2. 산업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감사대상이 되는 회사에서 10년이상 임·직원으로 종사했던 사람
3.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10년이상 일했거나, 공무원 및 법에 의해 설립된 지방연구원의 임·직원으로 10년이상 재직한 사람

4. (생략)

⑤ ~ ⑥ (생략)

제8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① 연구원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연구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실적보고서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결산보고서 및 발생주의·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서
2.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제1호의 예산·결산보고에 대한 검토의견 및 결산에 대한 감사보고서

제5조(이사회 등) ① 연구원에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원의 중요사항을 심의·결하는 이사회와 2명의 감사를 둔다. 이사회는 이사장 및 서울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이사회 구성 중 어느 한쪽의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 ③ (원안과 같음)

④ 원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을 이사로 추천한다.

1. 학계: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학교에서 5년 이상 교육관련 업무에 종사했던 사람
2. 산업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감사대상이 되는 회사에서 5년 이상 임·직원으로 종사했던 사람
3.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5년 이상 일했거나, 공무원 및 법에 의해 설립된 지방연구원의 임·직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원안과 같음)

⑤ ~ ⑥ (원안과 같음)

제8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① 연구원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연구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실적보고서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결산보고서 및 발생주의·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서
2. 제1호의 예산·결산보고에 대하여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검토의견 및 결산 감사보고서

제10조(경영평가 등): ① (생략)	제10조(경영평가 등) ① (원안과 같음)
제12조(시행규칙) 기금 및 출연금의 운용관리, 그 밖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삭제>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시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서울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①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서울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연구원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③ 연구원의 정관에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정관변경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사업)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 행정에 관한 중·장기계획 및 자료의 조사연구
2. 시 행정의 주요 당면과제에 대한 조사연구
3.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국내·외의 연구기관과 민간단체로부터의 연구용역, 원가계산 등의 수탁

4. 시 행정에 관한 연구관련 도서 및 간행물 발간
5.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학술대회 및 정보교류 협력
6. 기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기금 및 출연금) ① 시는 연구원의 시설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줄 수 있다.

② 연구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금을 들 수 있다. 기금은 시, 자치구 및 그 이외의 자의 출연금으로 조성한다.

제5조(이사회 등) ① 연구원에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원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이사회와 2명의 감사를 둔다. 이사회는 이사장 및 서울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이사회 구성 중 어느 한쪽의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이사회 업무 총괄한다. 이사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이사 선임일이 빠른 이사가, 선임일이 같은 이사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원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을 이사로 추천한다.

1. 학계: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학교에서 5년 이상 교육관련 업무에 종사했던 사람
 2. 산업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감사대상이 되는 회사에서 5년 이상 임·직원으로서 종사했던 사람
 3.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5년 이상 일했거나, 공무원 및 법에 의해 설립된 지방연구원의 임·직원으로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사회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연구원의 설립목적에 기여할 것으로 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사람
- ⑤ 법 제8조3항의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이사는 원장의 추천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이 임명한다.
- ⑥ 이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며, 이사 중 원장만 상근으로 한다.

제6조(원장 등) ① 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원장은 이사회
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 감사는 연구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감사는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이
사장이 임명한다.

③ 원장과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연구·조사의 위탁 및 자료제공) ① 시는 시정과 관련된 제반 연구·조사 업
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다른 연구기관에 우
선하여 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의 규정에 있는지 여부

2. 연구수행이 장기간 소요되는 등의 사유로 연구원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수행
이 용이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는지 여부

3. 과제의 성격 및 성과물의 이용목적에 따라 다른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지 여부

4. 연구원의 수행과제가 과다하여 추가로 수탁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인지
여부

② 연구원은 시와 그 산하기관에 대하여 조사·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
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공하여야 한
다.

③ 제2항에 따라 연구원에 제공된 자료는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제8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① 연구원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
한 같다.

② 연구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실적보고서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결산보고서 및 발생주의·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서

2. 제1호의 예산·결산보고에 대하여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검토의견 및 결산 감사
보고서

제9조(보고, 검사 등) 시장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연구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경영평가 등) ① 법 제19조에 따라, 시장은 정책개발기능을 강화하고 경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시 외부 전문기관과 시 소속 공무원이 같이 참여하여, 연구원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시장은 경영평가 실시방침과 결과를 서울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엄수의 의무) 연구원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과 결산 등의 업무를 맡은 공인회계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수 없다.

부 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